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2. 16 선고 2019가단11979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정

피고1. B

2. C

3. D

피고 2,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석현

변론 종결2022. 1. 26.

판결 선고2022. 2. 16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148,800,594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12. 24.부터 2022. 2. 16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/6지분에 관하여 2018. 11. 20. 체결된 매매계약을 109,779,6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원고에게 109,779,61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가.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/6지분 및 별지 목록 제3, 4,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20. 체결된 매매계약을 161,377,3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D는 원고에게 161,377,3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4. 원고의 피고 B, 피고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5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,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/5은 원고가,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6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168,800,594원과 그 중 160,000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, 그 중 8,800,594원에 대하여는 2020. 8. 1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주문 제2항과 같다.
3. 가.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/6지분 및 별지 목록 제3, 4,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20. 체결된 매매계약을 202,350,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D는 원고에게 202,350,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B은 2004년경 폐기물중간처리업,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2013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 골재도소매업 등을 함께 하였고, 2014년경 원고를 퇴사하고 개인사업을 하였다가 2015년경 원고에 재입사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8. 2.까지 E 및 F라는 상호로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천연골재 및

순환골재를 공급하고, 건설폐기물 처리를 해주면서 외상거래를 하였는데, 2013년경부터 2018.

2.경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및 폐기물 처리대금은 64,102,720원이고, 피고 B이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원고의 폐기물 처리대금 등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86,865,108원을 횡령하였다. 한편, 피고 B 소유인 아산시 G아파트 H호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

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. 11. 1. 원고에게 2,167,234원1) 이 배당되었다.

다. 피고 B은 2018. 11. 20. 사촌 형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/6지분을 매도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1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22. 피고 C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피고 B은 2018. 11. 20. 피고 C과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관계에 있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/6지분 및 별지 목록 제3, 4, 5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2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1. 22.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마. 한편, 이 사건 1,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부터 9호증, 갑 제13부터 1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을나 제1호증, 을다 제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피고는 원고에게 148,800,594원(= 미지급 물품대금 및 폐기물 처리대금 64,102,720원 + 횡령금 86,865,108원 - 원고에 대한 배당금 2,167,234원)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9. 12. 24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2. 16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C,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무초과상태 원고가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148,800,594원의 채권이

있고,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,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(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),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48,800,59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B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9. 12. 24.부터 2021. 9. 1.까지2) 연 5%(위 피보전채권은 미지급 물품대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민법에서 정한 연 5%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)의 비율로 계산한 12,576,707원의 합계이므로, 결국 피보전채권액은 161,377,301원(= 148,800,594원 + 12,576,707원)이 되고,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1,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이 이 사건 1,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,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앞서 본 것처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1.2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, B이 2017. 6. 14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에(갑 제2호증의 1부터 5)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도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B은 이 사건 1, 2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.

3)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) 피고들 항변의 요지

피고들은 B으로부터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, 다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며,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1, 2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다.

나) 판단

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,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,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

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지,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).

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피고 C은 B의 사촌형이고, 피고 D는 피고 C과 배드민턴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인 점, 피고 D는 피고 C과만 친분이 있고 B은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 D가 매수한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B의 채무 변제를 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도 없이 매수한 점, 피고들이 B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실제로 모두 B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은 기존의 B에 대한 채권을 매매대금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실제로 피고들이 B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,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

1)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,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,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다33734 판결).

2) 갑 제2호증의 1부터 5의 각 기재에 따르면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. 10. 12.과 2011. 12. 28. J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,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1, 2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9. 1. 21.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1, 2 매매계약의 취소에

다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.

3) 채무자 소유의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,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고(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다232594 판결 등 참조),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.

갑 제10호증, 을다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은 다음 표 '목적물'란 기재 토지와 같고, 각 목적물의 2018. 4. 16.경 가액은 다음 표 '부동산의 가액(A)'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그 이후에도 같을 것이라 추인되고, 이 사건 1,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J조합의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230,000,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피고 C이 취득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/6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113,922,801원(= 105,355,358원 + 8,567,443원)이고, 피고 D가 취득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5/6지분 및 별지 목록 제3, 4, 5항 기재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92,813,527원(= 42,837,211원 + 57,552,168원 + 57,290,113원 + 35,134,035원)이 되고, 피보전채권액이 161,377,301원임은 앞서 보았으므로,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1 매매계약은 피보전채권액보다 공동담보가액 113,922,801원이,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2 매매계약은 위 공동담보가액 보다 피보전채권액 161,377,301원이 더 적은 금액이므로,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9,779,613원,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161,377,301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피고 C	공동저당	K 전 916m ² (별지 제1항)	161,216,000	55,860,642	105,355,358
L 전 684m ² 의 1/6지분 (별지 제2항의 1/6)	13,110,000(4) 13,110,000원 = 78,660,000원 × 1/6	4,542,557	8,567,443		
피고 D	공동저당	L 전 684m ² 의 5/6지분 (별지 제2항의 5/6)	65,550,000(5) 65,550,000원 = 78,660,000원	22,712,789	42,837,211

피고 C	공동저당	K 전 916m ² (별지 제1항)	161,216,000	55,860,642	105,355,358
			× 5/6		
M 대 547m ² (별지 제3항)	88,067,000	30,514,832	57,552,168		
N 전 769m ² (별지 제4항)	87,666,000	30,375,887	57,290,113		
○ 임야 1,485 m ² (별지 제5항)	144,045,000	49,910,965 9,000,0006) 근저당권자 R, 피담보채권액은 피고들 주장에 따른다. 50,000,0007) 근저당권자 S, 파담보채권액은 피고들 주장에 따른다.	35,134,035		
단독	P 임야 430m ²	73,960,000	25,626,818	48,333,182	
공동저당	Q 임야 355m ²	30,175,000	10,455,506	19,719,494	
합계	663,789,000		374,789,004		

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으로 구하는 총액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즉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,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(전득자 포함)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,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,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,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(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

2006다1442 판결 등 참조),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 C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 매매계약을 109,779,6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가액배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09,779,61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피고 D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 매매계약을 161,377,3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가액배상으로 피고 D는 원고에게 161,377,3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원고의 피고 B,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판사권순남

별지

1)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,167,151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, 원고가 그보다 다액인 2,167,234원을 배당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.

2) 원고의 2021. 8. 24.자 준비서면 5쪽

3) 실제 피담보채권액(230,000,000원) ×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의 가액 /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(663,789,000), 원 미만 버림

4) 13,110,000원 = 78,660,000원 × 1/6

5) 65,550,000원 = 78,660,000원 × 5/6

6) 근저당권자 R, 피담보채권액은 피고들 주장에 따른다.

7) 근저당권자 S, 파담보채권액은 피고들 주장에 따른다.